# **`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5차) 정기공고**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7.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특허청	/ 한국지	식재산보호원
------	---------	-----	-------	--------

### □ 사업목적

- o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해외기업과의 현지 **분장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1)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사업 신청 시 대상제품 수출여부 항목은 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단계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수출단계 증빙에 지원 희망국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증빙 인정 불가(수출단계 판단기준은 5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 지원대상국가: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해외 IP센터	로스앤 젤레스	워싱턴 D.C.	베이징	광저우	일본	유럽	호치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
지원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 동부	중국 북부지역, 몽골	중국 남부지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에, 스우스, 네달란드,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 콜롬비아, 에콰도르
	27	l국	3개	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 2. 지원 내용

- □ 세부 유형별 지원 내용
  - ㅇ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기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단계 지원은 불가하나 개별국 진입단계는 지원 가능)
    - \* 상표·디자인은 1국가·1표장·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권리보호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금 E(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특허	~\$3,000*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상표, 디자인	~\$2,000 <sup>*</sup>	(중소) 50% (중견) 50%	▶연간 10건/1社, 총\$5,000 한도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까지 지원을 의미)

####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지재권침해피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증거 확보\*, 지재권 침해 물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
  - \* 경고장·소송 제기가 목적일 경우는 지재권분쟁 유형 신청 필요
- (지재권분쟁)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 검토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분쟁·침해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 (지재권침해피해) 현지 지재권 피 침해 실태조사(기본), 행정단속(추가) 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지원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 (지재권분쟁)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권리·제품 심층 분석, 신규 네이밍(상표) 전략 등 지원	~\$10,000	(중소) 70% (중견) 50%	▶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비밀유지 협약서(NDA),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 동일 사항(동일 제품·권리의 동일 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 ○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지원 내용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 기초상담 이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 자문 제공	<b>전액 지</b> (중소·중견 * 단, 연 5회를 <i>2</i> 요청시 타 기업	· — <b>100%)</b> <sup>논</sup> 과하여 자문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이 지원

#### □ 수행대리인 선정방법

-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별첨1, 시스템 참조)\*내 해당 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 사항 협의(필수)\*\*
  - \* 수행대리인POOL 외 대리인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원 문의
  - \*\* 직접 문의가 어려운 경우 해외IP센터(붙임2)에 수행대리인 정보 문의 가능
- 기업과 수행대리인 간 상기 비용견적 등 협의가 완료되면 해외
   지재권종합지원스템에서 사업신청 시 해당 수행대리인을 지정
- o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전**에 해외지식재산협력실로 **개별 문의 요망** 
  - \* 비등록 수행대리인은 별도의 심사절차(대리인등록신청서 제출)를 통해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선정여부 통보는 해당 대리인의 등록신청일부터 10여일 소요

#### □ 지원절차

o (정기모집) 권리보호. 분쟁·침해 초동대응 공통 적용

- ①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계약 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② 수행대리인의 수행 동의는 공고 마감일까지 수신 완료 후 제출 필수
- ③ 수행대리인 변경은 공고 마감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변경된 수행대리인의 동의는 공고 마감일까지 확인 후 제출
- (수시모집) 분쟁·침해 초동대응이 시급한 사항(패스트트랙 적용)
-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 (경고장 대응 등 시일이 매우 촉박한 건에 한함)을 우선 판단하고,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계약 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o 심층 법률 지문은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에 유선으로 직접 신청접수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5. 7. 1.(화) ~ 7. 21.(월), 18:00
      -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 및 시스템상 최종 제출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시모집(패스트트랙, 분쟁·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
    - 신청 기가: 상시\*
      - \* 반드시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서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받아야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접수 후 3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붙임2 참조)\*와 반드시 사전상담 필요

####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 2개 이상의 국가·권리에 대한 출원지원 신청 등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반드시 각각의 권리·국가별로 신청 필요(1개의 신청서에 국가·표장·상품류 미기재 또는 복수 기재 시 불선정)
-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희망국가/상품류\* 변경은 불가하나 지정상품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 수출단계 판단기준

- 수출 중: 지원 희망국이 표기된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지원 희망국 내 지사 운영, 지원 희망국 온·오프라인 판매내역 및 셀러 자격, 지원 희망국 판매 인보이스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
- 수출 계획·준비 중: 지원 희망국 수출 계획서, 지원 희망국 전시회 참가, 영문/희망국 언어로 작성된 브로슈어, 지원 희망국 내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희망국 수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업무협의자료(이메일 등)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
- 수출 계획 없음: 수출 중 또는 수출 계획·준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인정된 경우

#### [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ol> <li>해외지재권종합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li> </ol>	0		
	<ul><li>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li><li>* 유효기간 확인 필수(`25.3.31. 이후 발급)</li></ul>	0		
	3. 사업자등록증(명원)	0		
	4.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0	
기업 제출서류	5.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해외등록권리 증빙		0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6. 국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0		
	7.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0		
	8. 사업 신청 유형 관련 증빙자료 *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침해 증빙, 경고장 ·소장,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0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4. 세부운영계획

- □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
  - (선정기준) 내·외부 심사위원<sup>\*</sup>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모집 회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 \* 수시모집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진행
    - \*\* 선정심사기준: 붙임3 참조
  - (결과확인)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사결과 통보하며 해외 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상의 '지원기업 계약관리'에서도 확인 가능
- □ 지원기업-수행대리인 간 계약 체결
  - 지원기업은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행대리인과
     계약체결 실시(일정 도과 예상 시 반드시 보호원으로 사전연락 필요)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은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및 과제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서 작성
  - \* 출원 요청 건수, 행정단속 포함여부 및 최종결과물 구성 등
-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 대리인에게 입금(정해진 기한 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지원사업 시스템에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업로드(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 사업결과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수행대리인이 사업수행 완료\*시 지원기업 및 보호원에 통지하고,
   보호원은 사업결과 내용을 확인 후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 지원기업에서 미동의 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수행대리인**은 반드시 **지원기업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업 완료** 필요(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 유의사항

o 계약 체결 이후라도 지원제한 조건 사유 해당, 신청요건 위반사항, 기타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거절 가능

#### □ 문의처

- o 대표번호/이메일: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o 해외IP센터 10개소 연락처는 '붙임2' 참고

### [붙임] 1. 국가별 지원한도

- 2. 해외IP센터 연락처
- 3. 선정심사 기준
- 4. 지원제한 조건

#### [별도파일] 1. 수행대리인POOL 리스트

2. 니스, 로카르노 분류표

# 붙임1 권역·국가별 지원한도

71 CH	국 가	지원한도(USD), 건당			
권 역	가 기 상표		디자인	특허	
북 미	미국	700	1,500	2,500	
<b>–</b> – 1	캐나다	700	1,500	2,300	
	멕시코				
	브라질				
	칠레	•			
중남미	아르헨티나	400	450	750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일본	500	500	1,500	
	중국	300		1,000	
동북아	(마카오)		300	·	
0 1 1	대만	400		1,000	
	(홍콩)	650	650	1,200	
	몽골	500	800	1,300	
	베트남	300	500	1,500	
	필리핀	300	500	1,500	
	호주	500	1,500	2,000	
	뉴질랜드	500	1,500	2,000	
동남아/오세아니아	싱가포르	500	450	1,500	
-	태국	500	700	1,500	
	인도네시아	400	600	1,500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400 400	500 500	1,500	
	미얀마	400	500	1,500 1,500	
	인도	400	200	1,500	
	방글라데시	300	200	1,500	
	파키스탄	300	200	1,500	
서남아/중동	UAE	2,000	1,000	3,000	
110-1700	사우디아라비아	2,000	1,000	3,000	
	카즈흐스탄	300	200	1,500	
	이집트	300	200	1,500	
	유럽통합			,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유럽	스위스	1,000	600	2,500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스웨덴				
	러시아				

# 붙임2 해외IP센터별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이메일
크 스 에 제 레 스 디 메 티	+1-323-424-4005	la in contan@lesimo vo lu
로스앤젤레스 IP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워싱턴 D.C. IP센터	+1-571-459-2501	washington incontor@kaina rakr
제공단 D.C. IP앤디	070-5150-2832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베이징 IP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과거인 ID세터	+86-20-2208-1510	guang thau in contar@kaina ra kr
광저우 IP센터	070-5150-2804(2806)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일본 IP센터	+81-3-6362-0500	tokyo incontor@kojna ro kr
글는 [F앤니	070-5150-2787	tokyo_ipcenter@koipa.re.kr
유럽 IP센터	+49-69-5050-346-30	frankfurt_ipcenter@koipa.re.kr
π <b>α</b> " α-ι	070-5150-2782	Trankfult_ipcenter@koipa.re.ki
호치민 IP센터	070-5150-2779(2781)	hochiminh_ipcenter@koipa.re.kr
방콕 IP센터	070-5150-2754(2774)	bangkok_ipcenter@koipa.re.kr
뉴델리 IP센터	+91-11-4230-6300	nawdalhi incantor@koinarokr
ㅠㄹ니 IP앤니	070-5150-2753	newdelhi_ipcenter@koipa.re.kr
멕시코시티 IP센터	+52-55-5920-2730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그시고시의 15년의	070-5150-2746	mexicocity_ipcenter@koipa.re.ki

# 붙임3 선정 심사기준

- □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 미충족시 지원대상 탈락
  - ㅇ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ㅇ 지원 제한조건(별첨2 참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일 것
- □ (2단계)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고득점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

평가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및 점수
기업 규모	중소, 중견 기업 구분	20	■ (소기업) 20점, (중기업) 15점, (중견기업) 10점
지원 항목	지원 신청 배경 및 수혜 이력	25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5~10점
수출 기여	실제 수출 여부, 수출 계획의 구체성 등	15	<ul> <li>■ 법률서비스 신청국가에 대한 해외 현지 수출실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15점</li> <li>■ 수출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10점</li> <li>■ 수출실적도 명확하지 않고, 수출여부도 불명확한 경우: 0점</li> </ul>
지원 적합성	기업 활동과 지재권의 관련성 및 지원시기 적정성 등	20	■ 기업의 영업활동과 지재권의 관련성,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10점 ■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시기 적절성,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10점
지원 효과성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경쟁력 향상 등 예상 성과	20	■ 지원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활동 안 정성, 분쟁예방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S(20), A(15), B(10), C(5)
	총 계	100	

<sup>※ &#</sup>x27;심층 법률자문'은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만 통과하면 신청순으로 모두 지원. 다만, 신청이 많은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제한 조건

# 지원제한 조건

- o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 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 ㅇ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지점·사무소(이하'한국기업 지사'라 함)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아사업 지원으로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이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신청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ㅇ 종전(최근 3년)에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의 신청인 경우